

보건복지 소식 광장

보건복지부 2020년 5월 보도자료(http://www.mohw.go.kr/front_new/al/sal/0301ls.jsp?PAR_MENU_ID=048&MENU_ID=0403) 중 주요 내용을 발췌한 것임.

I

보건복지부, 생활시설 아동의 마음 상처 치료한다

- 복권기금 16억 원 투입해 아동 1,200명에 심리검사와 미술·놀이·의료치료 등 제공 -
- 코로나19로 인한 아동의 심리·정서 상태 확인 등 심리방역 병행 -

- 보건복지부(장관 박능후)는 한국아동복지협회와 함께 학대, 코로나19 등으로 다양한 부적응 문제를 겪는 아동생활시설* 1,200명 아동에게 복권기금(16억 원)을 활용해 심리종합검사와 재활치료를 추진한다고 밝혔다.

* 아동양육시설, 공동생활가정, 아동일시보호시설, 아동보호치료시설

- 그간 정부는 아동시설 내 부적응 아동이 증가*함에 따라 예산**을 늘렸으며, 올해도 예산을 지난해보다 증액(12억→16억 원)해 사업 대상을 350명(850→1,200명) 더 확대했다.

* 최근 시설 입소 아동의 약 70%가 학대 등으로 인한 트라우마, 폭력·자해, 우울, ADHD 등으로 치료 필요 (출처: '18년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문제행동 실태조사 결과)

** ('12) 600명 6억 원 → ('18) 725명 10억 원 → ('19) 850명 12억 원

- 심리종합검사는 선별검사를 통해 정밀검사 아동을 선별하고, 정서·인지·행동 발달상의 이상이나 문제가 있는지를 검사를 통해 살펴 다양한 형태로 정서·행동 문제에 개입한다.

- 문제 개입은 아동이 스스로의 감정, 경험, 행동 등을 탐색하고 표현하여 부적응 문제를 해결하면서 지적·정서적·신체적 발달은 물론 사회성이 높아지도록 놀이·음악 등의 치료와

개별·집중 상담, 의료치료 등으로 이루어진다.

- 특히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외출 및 외부인 출입 금지*로 시설에서 대부분 시간을 보낸 아동의 심리·정서 상태도 확인하고 심리 방역을 병행한다.

* 지난 1월 말부터 현재까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가족 면회, 외출, 외박 등 제한

- 아울러 임상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*로 구성된 ‘솔루션 위원회’는 복합적 욕구를 지닌 아동에 대해 다각적 논의와 해법을 제시하여 치료의 효과성을 높인다.

* 재활심리사, 임상심리사, 심리상담사, 학계 교수진 (사례관리 분야)

- 이 밖에 아동과 원가족 간 긍정적인 가족 관계 형성을 위해 효과적인 양육 방법, 자녀에 대한 올바른 이해, 가족 치료 및 상담, 가족 체험 프로그램* 등도 같이 진행한다.

* 요리 테라피, 캠프파이어, 스냅 촬영, 편지쓰기 등의 가족 간 화합, 1박 2일 여행·캠프를 통한 유대감 형성, 아동-원가족 친밀감 향상을 위한 음악치료가 진행 레크레이션, 가족 운동회 등

- 보건복지부 변효순 아동권리과장은 “최근 8년간 복권기금 총 84억 원을 투입해 가정에서 보살핌을 받을 수 없는 보호아동 5,163명의 시설 입소 이전에 가졌던 문제들을 치료하고, 발달적 욕구를 충족시켜 사회 생활에 잘 적응하도록 보호해 왔다.”라고 전했다.

- 아울러 “앞으로도 보호아동이 필요한 서비스를 적시 적소에 받아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.”라고 밝혔다.

참고 | 아동복지시설 아동 치료·재활지원사업 성공 사례

■ (사례1) 방임경험 아동 음악치료 결과

- 부모의 방임으로 시설에 온 마음(가명, 8세, 여)이는 평소 불안 증상을 겪고 있어 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, 감정 조절이 어려워 거친 행동을 빈번하게 보였다.
- 방임 경험이 있는 ‘마음’이는 음악치료를 통해 핸드벨, 공명실로폰 등 다양한 악기로 감정을 표현하는 등의 심리치료를 받았고 그 결과 스스로의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게 되고, 스스로의 문제점을 생각하고 조절하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나타났다.

■ (사례2) 분리경험으로 인한 행동문제 아동 놀이치료

- 출생 28개월 만에 시설에 온 열음(가명, 8세, 여)이는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감 부족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불신감과 불안감을 겪었다. 그로 인해 주변 사람들과 또래 친구들에게 공격적이고 과한 애정표현을 보이는 듯한 행동을 보여 친구를 사귀는데 어려움을 겪었다.
- 친구를 사귀는데 어려움을 겪는 '열음'이는 장난감, 인형, 모래 등을 가지고 놀이치료를 통하여 자신의 진실 된 속마음을 표현하게 되었다. 치료가 진행되면 될수록 공격적이고 충동적인 모습이 사라지게 되었고 자신에 대한 생각도 긍정적으로 바뀌었다.

※ 자료: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「알림-보도자료」, 16519,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, 2020.5.4.

II	<p>「K-방역」의 경험을 전 세계와 공유합니다</p> <p>- 코로나19 대응 국제방역협력총괄TF 제1차 웹세미나 개최 -</p>
----	--

■ 정부는 5월 4일(월) 코로나19 대응 국제 방역협력 총괄 T/F 주관으로 전 세계 보건의료 관계자와 함께 「K-방역」에 관한 제1차 웹세미나* 를 개최한다.

* 실시간 동영상 스트리밍 주소: <https://www.ustream.tv/medicalkorea>

- 〈국제방역 협력 총괄T/F〉**
- 국제사회의 쇄도하는 「K-방역」 경험 전수 요청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외교부(2차관 주재) 주관 관계부처(차관보급)와 유관 기관 참여
 - 코로나19 국제 방역 협력 총괄·조정 업무를 수행

□ 제1차 총괄 T/F: 12개 정부부처 및 5개 유관기관 참여

- 정부부처(12): 국무조정실, 기획재정부, 교육부, 과학기술정보통신부, 외교부, 법무부, 행정안전부, 산업통상자원부, 보건복지부, 질병관리본부, 소방청, 경찰청
- 유관기관(5): 한국보건산업진흥원,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, 국립중앙의료원, 한국국제의료협회, 한국국제협력단

○ 총괄TF의 웹세미나는 우리 방역 경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쇄도하는 공유 요청에 체계적·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한다.

- 보건복지부 등 정부 부처와 국제보건의료재단, 한국보건산업진흥원, 한국국제협력단 등 유관기관이 협업하여,
- 5월에서 7월까지 격주 또는 일주일 간격으로 정기 개최할 예정이다.
- 보건복지부는 ‘보건 및 방역 전략’ 및 ‘치료’ 주제의 웹세미나를 5월 4일부터 6월 17일까지 총 5회*에 걸쳐 개최할 계획이다.

* (보건 및 방역 전략) ▲ 5.4.(15시) ▲ 5.13.(17시) ▲ 5.27.(9시), ▲ 6.10.(시간 미정)

** (주제별 대응 경험-치료) ▲ 6.17.(시간 미정)

■ 4월 말 기준으로 우리 정부는 약 50여개 국가와 여러 국제기구를 대상으로 170여회에 걸쳐 웹세미나, 화상회의, 전화회의 등 다양한 형식을 통해 우리의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공유하였다.

■ 총괄TF의 웹세미나는 ▲위기 대응 전략에서부터 ▲진단, 격리 및 역학조사, 치료·임상경험·환자관리 ▲출입국관리 ▲유관정책(경제, 교육, 정보통신, 선거) 등 방역 정책 전반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.

○ 5월 4일 제1차 웹세미나는 코로나19 관련 ‘보건 및 방역 전략’을 주제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권순만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.

- 보건의료 관련 국제기구 및 각국 보건의료 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전 세계 외교공관을 통하여 신청을 접수하였으며, 영어와 러시아어로 동시 통역될 예정이다.

* 이후 회차에는 스페인어, 불어 등 동시통역 예정

- 이 세미나는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(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)의 인사말을 시작으로,
 - ①방역정책과 현황(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전략기획반장)에서 ②진단검사(세브란스병원 진단검사의학과 이혁민 교수), ③역학조사(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이재갑 교수), ④치료와 임상(연세대 내과학교실 염준섭 교수), ⑤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한다.
 - 이번 웹세미나는 국제방역협력 총괄TF라는 하나의 채널을 통하여 K-방역에 관한 정책과 기술이 어우러진 종합적 정보를 전 세계에 알리는 데 의의가 있다.

■ 총괄TF의 웹세미나 결과는 미래의 한국 보건 의료 발전의 디딤돌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.

- 웹세미나 주요 내용 및 질의응답은 종합 정리하여 주제별 「K-방역」통합 매뉴얼(가칭)로 만들어 향후 보건·방역분야 국제협력 콘텐츠로 활용할 예정이다.
- 참여국과의 채널은 지속적으로 유지하면 앞으로 보건 의료 분야를 비롯한 다양한 양자·다자 협력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.

※ 자료: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「알림-보도자료」, 16520, 보건복지부 해외의료총괄과·국제협력담당관,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외국인환자 유치단,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글로벌개발협력본부 2020.5.4.

III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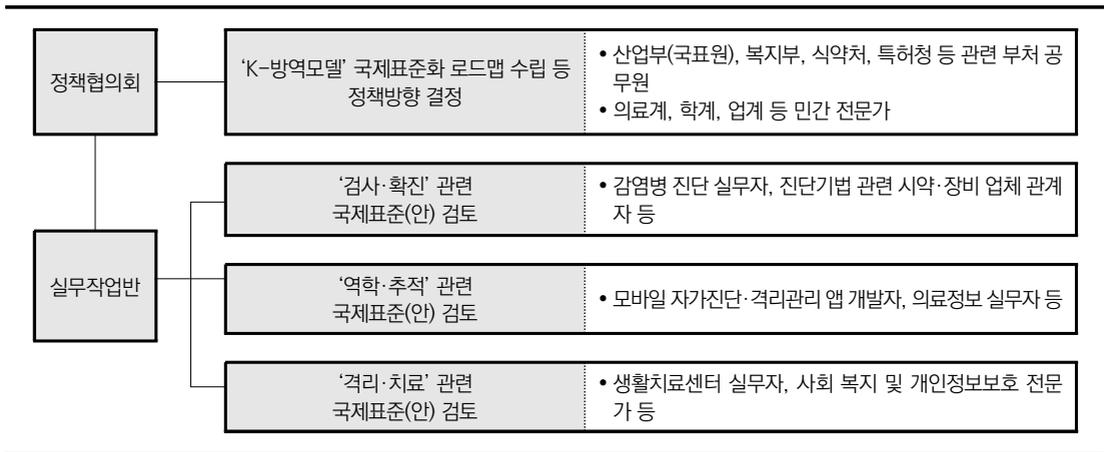
K-방역모델 국제표준화, 민·관이 함께 된다

- K-방역모델 국제표준화 정책협의회 제1차 회의 개최 -

■ 정부는 우리나라의 다양한 감염병 대응 모범사례인 ‘K-방역모델’을 국제표준화하기 위한 ‘민·관 전문가 협의회’를 본격 가동하고, 5.8일 16시 서울 The-K호텔(거문고A홀)에서 제1차 ‘정책협의회’를 개최하였다.

- 협의회는 국제표준화 로드맵 수립 등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‘정책협의회’와 국제표준안 검토 등을 위한 ‘실무작업반’으로 구성된다.

〈K-방역모델 국제표준화 민·관 전문가 협의회 구성〉



- ‘정책협의회’는 산업통상자원부(국가기술표준원), 보건복지부, 식품의약품안전처, 특허청 등 관련부처 공무원*과 의료계, 학계, 업계 민간 전문가 등 20명으로 구성했다.

* 위원장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맡고, 관련 부처 국장급 공무원이 위원으로 참여하며 국무조정실 공무원도 배석

- 민간 전문가로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의료 전문가, 자동차 이동형(Drive Thru)·도보 이동형(Walk Thru) 등 선별진료소 제안·운영자 및 의료분야 국제표준 전문가 뿐만 아니라,

- 진단키트·선별진료소 관련 업체, 모바일 앱(App) 개발 등 정보통신 전문가, 표준특허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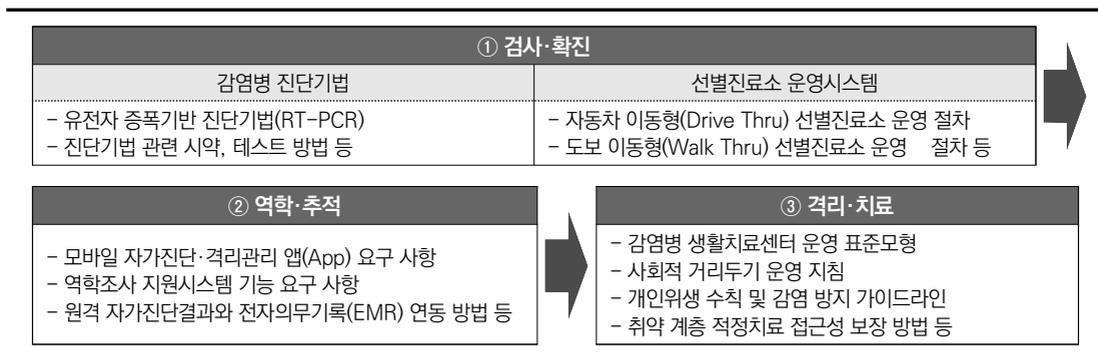
■ ‘실무작업반’은 ‘검사·확진→역학·추적→격리·치료’로 이어지는 감염병 대응 과정별 표준안을 검토할 현장 실무인력 중심으로 구성하며,

- 관련 국제표준 기술위원회(TC) 동향 공유, 표준안 작성·검토 등을 수행한다.

■ 제1차 ‘정책협의회’에서는 선별진료소 운영절차, 생활치료센터 운영 표준모형 등 18종의 'K-방역 모델' 국제표준화를 추진하기 위한 로드맵(안)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고,

○ 각 분야별로 필요한 국제표준(안)을 구체화하여 ISO 등 국제표준화기구에 순차적으로 제안할 계획이다.

〈K-방역모델 국제표준화 분야(안)〉



■ 향후 ‘정책협의회’는 부처별 표준정책 조율, 관련 예산안 협의 등 중요사항을 신속히 논의해 실무작업반 업무를 적극 지원한다.

○ ‘실무작업반’은 K-방역모델 국제표준별 진행 상황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계획이고,

○ 특히, 협의회 참여 전문가들이 맡고 있는 코로나19 방역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화상회의, SNS 대화방, 서면회의 등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.

■ 이 날 ‘정책협의회’ 참석자들은 “K-방역모델의 국제표준화를 통해 전세계 감염병 확산 방지와 우리 바이오산업의 세계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, 민·관이 함께 발맞추어 뛰겠다”고 뜻을 같이 했다.

■ 국가기술표준원 이승우 원장은 “K-방역모델의 국제표준화 추진은 코로나 19 대응과정에서 활용된 우리의 기술과 경험을 인류공통의 지식자산으로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대한민국이 보건의료 분야의 변방에서 중심국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”이라고 강조하면서,

- 특히, “국제적 신뢰와 관심을 받고 있는 지금이 국제표준화의 적기인 만큼 K-방역모델이 세계표준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 및 국제기구와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다”고 밝혔다.

※ 자료: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「알림-보도자료」, 16547,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바이오화학서비스표준과,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선별진료검사팀·환자시설 1팀,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로기기정책과, 특허청 산업재산창출전략팀, 2020.5.9.

IV

투명하고 명확한 보건의료 실태조사 내용, 방법 등 구체화

-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(5.12) -

- 보건복지부(장관 박능후)는 보건의료실태조사의 내용, 방법 및 공표 등의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는 「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」이 5월 12일(화)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.

- 지난해 12월 「보건의료기본법」이 개정됨에 따라 이번 시행령 개정은 법률에서 위임한 보건의료 실태조사 관련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여, 행정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취지이다.

* 법률 제16729호, 2019.12.3. 개정, 2020.6.4. 시행

-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 (6월 4일 시행)

- 첫째, 보건의료 실태조사는 외래 또는 입원 환자 수, 평균 재원 일수, 병상 이용률, 연간 총 진료비 등 보건의료 수요 및 보건의료서비스 이용 행태, 인력□시설 및 물자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토록 하였다(영 제14조제1항).
- 둘째, 보건의료 실태조사를 보건의료 관련 기관(연구기관, 법인 또는 단체)에 의뢰할 수

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(영 제14조제2항).

- 셋째, 실태조사 결과는 보건복지부 누리집(mohw.go.kr)을 통해 60일 이상 공개하도록 하여 보건의료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학계·산업계 등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(영 제14조제3항).

■ 보건복지부 김현주 보건의료정책관은 “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체계적인 실태조사 수행 근거가 마련되었을 뿐만 아니라, 실태조사 결과가 관련 보건의료정책은 물론 민간에서도 폭넓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.”라고 밝혔다.

참고 보건의료 실태조사 개요

■ 보건의료 실태조사 개요

- (목적) 보건의료 자원의 공급 실태·이용 행태에 관한 신뢰성 있는 통계자료를 산출하여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
※ 추진 근거: 보건의료기본법 제55조 및 시행령 제14조
- (내용) 국민의 보건의료 수요 및 이용행태, 보건의료 자원(인력·시설·물자 등)에 관한 실태
- (경과) 2000년 보건의료기본법 제정 후 2001년부터 매 5년마다 국민 보건의료실태조사 실시

※ 자료: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「알림-보도자료」, 16565,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, 2020.5.12.

V

보건복지부, 가정위탁 보호율 높이기 위해 6대 과제 중점 추진

- 제17회 가정위탁의 날 비대면 온라인 행사(5.22.), 37명 유공자 포상 (장관 표창 28명) -
- 2024년까지 가정위탁 보호율을 37%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전문가정위탁제 도입 및 후견인제도 활성화 등 6대 과제 중점 추진 -

< 6대 과제 주요 내용 >

보건복지부는 가정위탁 보호율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예비위탁부모 발굴확대 등 6대 과제를 지방자치단체 (시행주체)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차질없이 시행

- ① (예비위탁부모 발굴·홍보 강화) 기존 친족위탁 탈피를 위해 일반위탁부모를 늘리고, 민·관 합동 공공캠페인 전개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교육 신설 추진
- ② (위탁가정의 지원 현실화) 아동용품구입비 지급 기준 신설(100만 원, 1회),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양육보조금을 연령별 차등 지급 기준으로 변경(20만 원(19년) → 연령별 30~50만 원(20년))
- ③ (전문가정위탁제도 본격 도입·위탁유형 다양화) 학대피해아동 등 특성을 고려한 보호를 위해 전문가정위탁제도 법제화, '전문가정위탁위원회' 구성·운영, 선진국 수준 예산지원 기준 권고 및 일시위탁 도입 추진
- ④ (후견인제도 활성화) 친권자 친권상실 사유 구체화, 후견인 선임 신청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역할 강화,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연계 법률구조지원 활성화
- ⑤ (원가정 조기복귀 지원) 아동의 원가정 복귀 지원을 위해 부모의 면접교섭권을 형제자매 등 가족까지 확대하는 근거 마련
- ⑥ (가정위탁 기반(인프라) 확대) 서비스 이용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전국 17개 가정위탁지원센터 인력 충원 및 분소 설치 등 추진

■ 보건복지부(장관 박능후)는 5월 22일(금) 「제17회 가정위탁의 날」*을 맞아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28명 등 가정위탁 유공자 및 관련 공모전 수상자 총 37명**에 대한 포상과 함께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.

* 2003년 가정위탁제도 도입, 2004년부터 5월 22일을 '가정위탁의 날'로 지정·운영

** 장관표창 28명, 장관상 9명(모범위탁아동 7명, 가정위탁 수기공모전 2명)

○ 올해 가정위탁의 날 기념식을 비롯한 각종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유튜브·누

리집(홈페이지) 등 온라인으로 진행한다. [참고 1]

- 기념식은 유튜브* 생중계로 진행하며 전국 2만여 명의 위탁아동·부모와 전 국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다.

* 유튜브 '아동권리보장원' 채널에서 오후 2시부터 3시 30분까지 생중계

- 아울러 가정위탁 행사를 위해 오는 20일부터 31일까지 11일간 누리집(dayforchild.ncrc.or.kr)을 개설하여 축하 영상, 공모전 수상작 전시, 유공포상자 소개, 모형집* 조립 행사 등 가정위탁 가치 확산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.

* 위탁아동·부모가 함께 사는 집(정원) 모형을 만들며 위탁가정의 소중한 의미를 되새김

■ 가정위탁 제도 운영과 활성화에 기여하여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한 유공자는 28명이다.

- 유공자 중 위탁모 홍삼숙씨는 2002년부터 지금까지 7명의 아동을 양육하면서 문제행동에 대한 심리치료를 지원하고 위탁아동이 다니는 고등학교 학부모 대표를 맡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하여 3명의 아동을 다시 친부모 품으로 돌아가게 했으며, 현재는 대학에 진학한 4명의 아동을 보호해 가정위탁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었다.
- 김혜연씨는 2006년부터 장애(난치성 궤양증후군)가 있는 위탁아동을 14년 넘게 양육하며 언어 및 인지발달을 위한 치료를 병행하고, 사회성 발달을 위해 일반학교로 진학시켜 학업을 도우며 아동이 다양한 경험을 하도록 지원하였다. 2017년부터는 비슷한 처지의 어려운 아동에게 장학금을 후원하는 등 자원봉사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여 가정위탁 사업 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이다.

■ 한편 보건복지부는 아동권리 관련 국제규범*과 국내 법령·정책에 따른 선(先) 가정 보호정책 강화를 위해 2018년 기준 24%인 가정위탁 보호율을 2024년까지 37%**로 끌어올리기 위해 6대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.

* 「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」(1991년) : 제3조 아동 최선의 이익 최우선 고려 등

** 2018년 가정위탁 아동 937명, 2024년까지 약 1,500여 명 수준(목표)

보호대상아동의 가정보호를 위한
가정위탁 6대 과제
 '2024년까지 가정위탁보호율 37%까지 확대'



(1) 기존의 친족중심*의 가정위탁을 탈피하고, 가정위탁 활성화를 위해 예비 일반위탁 부모를 대폭 양성한다.

* 「민법」에 의한 8촌 이내 친인척가정 보호가 전체 가정위탁(1만111명)의 91.8%(10,198명)('18년 기준)

※ 가정위탁보호율: 25%('20년) → 28%('21년) → 31%('22년) → 34%('23년) → 37%('24년)

○ 보호아동이 시설보다는 가정에서 자랄 수 있도록 예비위탁부모를 추가 확보(약 500여 명*) 하고, 위탁아동이 건강한 보살핌을 받도록 위탁부모에 대한 양성·보수교육을 강화**한다.

* 우선적으로 베이비박스 유리아동에 대한 전문가정위탁 보호체계 확립 추진

** 교육시간 확대 : 4시간('19년) → 5시간('20년), 전문위탁 양성교육 20시간 신설

○ 가정위탁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를 위한 민관합동 공공캠페인을 전개하고, 지방자치단체 담당공무원 지침(매뉴얼) 배포 및 교육과정 신설을 검토한다.

* 지역 단체, 축제 및 캠페인 등 타킷 홍보, 전국적 라디오, 케이블 및 공중파 등 매체광고, 홍보대사, 사회관계망 서비스(SNS) 등 온·오프라인 홍보 다각화

(2) 사회적 양육 부담을 실천하는 위탁가정에 대한 지원 현실화를 위해 신설 또는 상향한 양육비 권고기준의 지방자치단체 이행을 독려한다.

○ 위탁 초기에 필요한 생필품 구입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아동용품구입비 지급기준(최초 1회, 100만 원)을 신설하였다.

- 아동의 연령에 따라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*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일괄적인 기준으로 지원했던 양육보조금을 연령대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기준을 강화한 것이다.

* 위탁아동의 상급학년 진학부터 교육비(과외 활동비, 교재비 중), 의류비, 식비, 교통비, 용돈 등 추가 요구되는 양육비 발생

〈아동용품 구입비 신설 및 양육보조금 지원 확대〉



- 참고로 위탁가정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아동용품구입비, 양육보조금 및 전문아동보호비 등을 지원받고, 국가사업으로 디딤씨앗통장, 상해보험료, 심리검사·치료 등을 지원받고 있다.
- 생계·의료·교육 급여, 아동·양육수당, 전세자금 등 간접적으로도 다양한 지원을 받는다.
- 그러나 지역별로 지원규모의 편차*가 커 가정위탁 활성화 추진 성과가 더디게 나타나 지자체 관련 협의회·평가를 통해 적극적인 역할을 확보해 나간다.

* 양육보조금(12~20만 원), 전문아동보호비(15~50만 원), 자립정착금(대전 5,000~수원 1,000만 원), 대학등록금(광주, 대전, 경기, 충남, 경남 0~500만 원) 등

(3) 전문가정위탁제도를 보편적 위탁 유형으로 도입하고, 위탁가정 유형을 다양화한다.

- 학대피해 아동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*에 대한 맞춤형 보호를 위해 전문가정위탁 제도를 위탁유형으로 법제화한다.

* 2018년 기준 위탁아동 중 학대/방임 피해아동 249명, 경계선 지능아동 78명, 36개월 미만 영아 94명 등 총 421명

※ 전문가정위탁 시범사업(2017년): 대구, 전북, 충북, 부산에서 시범 운영결과 문제행동, 정서불안 및 과잉행동장애(ADHD) 감소 등 유의미한 긍정적 변화 확인

- 아동권리보장원 내 '전문가정위탁위원회'를 두어 아동별 맞춤형 사례관리를 위한 적합한 보호프로그램을 설계하도록 한다.

〈전문가정위탁 아동의 맞춤형 통합 사례관리 서비스(예)〉



※ 보호대상 아동별, 보호 주체별(친부모, 위탁부모 및 기관별) 역할 정립 등 맞춤형 운영계획 수립(최초 사정자료를 기초하여 배치 후 1개월 이내 작성)

- 또한 한해 130여 명씩 발생하는 베이비박스 유기아동에게는 시설보호보다는 전문적인 가정보호가 최우선 되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의 유기아동 성(姓)·본(本)창설과 보호아동 배치에 대한 책임을 강화한다.

* 베이비박스 유기아동의 대부분(70.6%)이 시설보호('19년 발생 현황: 130명)

- 전문가정위탁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선진국 수준*의 양육비 지원기준(전문아동보호비 월 100만 원)을 올해 초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으며, 전문가정위탁 지침(매뉴얼)을 올해 중 배포한다.

* 미국 오레곤주의 기본 위탁보호 지원금은 0~5세 \$575, 6~12세 \$655, 13~18세 \$741이며, 별개로 아동 특성별 추가지원금(\$212~\$850), 개인돌봄서비스, 교통비 등 지원

- 위탁부모의 질병 등으로 인한 양육공백 해소를 위해 다른 위탁가정에 일시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중·장기적으로 보호기간별(단기·장기·영구 등) 새로운 위탁유형 도입도 검토한다.

〈외국의 가정위탁 유형〉



(4) 위탁아동·위탁가정의 복리향상을 위해 정책 보완과 법률서비스 지원 등을 강화한다.

- 위탁아동의 법적 권한 부재로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친권자 친권상실 사유를 구체화(연락 두절 또는 소재 불명)하는 등 후견인제도를 활성화해 나간다.

* 「아동복지법」제18조: (현행) 그 밖에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 → (변경) 연락두절 또는 소재불명 등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

- 후견인 선임 신청에 대한 지자체·가정위탁지원센터의 역할을 강화*하고,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연계한 법률구조지원**을 활성화한다.

* 친권자 또는 후견인 부재 아동은 지자체에서 후견인 선임 청구를 실시

** 심판 지원(인용 총 34건): 6건('16) → 6건('17) → 17건('18) → 19건('19)

- 과잉행동장애(ADHD), 정서불안장애 등 행동·정서적 문제를 가진 아동의 심리검사·치료비를 지속 지원하고, 위탁부모도 심리치료(양육상담)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.

- 또한 가정위탁아동의 예기치 못한 사고 및 질병에 대비하여 지원하고 있는 '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'의 보장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.('20년 12개에서 15개*로 확대)

* '20년 보장성 강화(추가 사항): 골절발생위로금, 폭력피해위로금, 식중독위로금

(5) 친부모가 있는 아동의 원가정 조기 복귀를 위해 아동과 가족*간의 정기적 면접교섭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.

* 「민법」상 부모의 면접교섭권을 형제자매 등을 포함한 가족으로까지 확대

- 또한 친부모에 대한 정기상담, 친부모·아동 교류 프로그램 운영 개발, 친가정·위탁부모 교육 등 친가정 복귀 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한다.

(6) 서비스 이용의 접근성·형평성을 고려하여 전국 17개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인력 총원 및 분소 설치 등 가정위탁 인프라를 확대해 나간다.

- 인력기준 완화*를 통해 부족한 인력 충원을 유도하고, 위탁아동 수('19년 12월 기준)를 고려, 경기(위탁아동 1,000명 이상), 강원·전남(위탁아동 900명 이상), 경북·서울(위탁아동 800명 이상)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분소 설치를 추진해 나간다.

* 상담원 배치 기준: 센터당 6명 + 위탁아동수가 400명을 초과 시 200명 초과 시마다 1명 추가 배치(「아동복지법 시행령」 제47조)

** ('19년) 17개소, 분소 없음 → ('20년~) 분소 설치 추진

-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“위탁아동을 가슴으로 품고 내 자식처럼 양육하고 계신 전국의 위탁부모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, 정부는 위탁부모님의 양육 부담을 덜어드리고 우리 아동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.”라고 밝혔다.
 - 아울러 “가정위탁 6대과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기대한다.”라고 덧붙였다.
- 아동권리보장원 윤혜미 원장은 “가정위탁의 날 기념 온라인 행사를 계기로 가정위탁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한층 더 높아지고, 위탁부모님들과 후원자들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기를 노력해 나가겠다.”라고 밝혔다.
- 가정위탁 제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가정위탁 문의(전국 1577-1406) 또는 관할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.

참고 가정위탁사업 개요

■ 사업 내용

- (목적) 보호대상아동*의 조속한 친가정 복귀 지원을 위해 위탁가정의 가정적 분위기에서 보호·양육함으로써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
 - * 만18세 미만의 아동 중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않거나 양육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
- (정의) 보호대상아동의 양육을 위해 성범죄, 가정폭력, 아동학대,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으며,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일정 기간 위탁하는 것(「아동복지법」제3조)
- (위탁 유형) 일반가정위탁, 대리양육(친·외조부모) 및 친인척 위탁(8촌 이내 혈족 등)

〈혁신의료기기군 지정 대상 분야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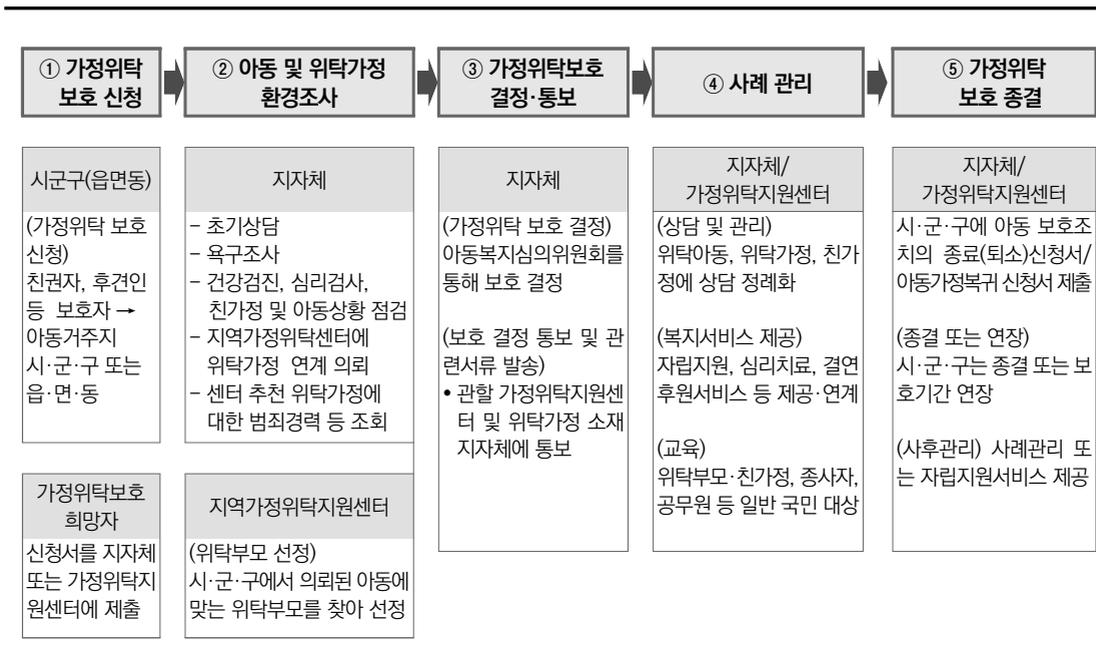
연도	계(명)	일반가정	대리양육	친인척	비고
2017	11,975	937	7,942	3,096	
2018	11,111	913	7,412	2,786	
2019	10,334	905	6,871	2,558	

■ 그 간의 추진 경과

- 2003년: 가정위탁지원센터 전국 확대(16개 시·도, 총 17개소)
- 2006. 1월: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
- 2010. 1월: 입양 및 가정위탁 아동 심리치료비 지원
- 2012. 8월: 「아동복지법」개정(시·군·구 가정위탁지원센터 설치근거 규정, 가정위탁보호 아동 자립지원 근거 규정)
- 2016. 3월: 「아동복지법」개정(가정위탁지원센터를 아동복지시설에 포함)

■ (추진 체계) 복지부 → 지자체, 가정위탁지원센터(17개소)* → 위탁가정

* 위탁가정 발굴, 위탁아동·가정에 대한 상담·교육·사례관리·자립지원 및 친가정 복귀 지원



'가정위탁' 너무너무 궁금해



가정위탁이란?

만 18세 미만의 아동이 다양한 사유로 부모와 함께 살 수 없는 경우 일정기간 위탁가정에서 보호, 양육하는 제도입니다.

☞ 위탁가정이 되려면?



적합한 소득



종교 자유 인정



25세 이상
아동과 나이차
60세 미만



범죄전력 및
정신질환No



자녀수
4명이하
(위탁아동 포함)

☞ 위탁가정이 되고 싶어요!



☞ 가정위탁, 이런 혜택이 있어요



양육보조금
아동 연령별
월 30~50만원 차등지원



**위탁아동
상해보험 가입 및
심리치료 지원**



디딤씨앗통장
아동 적립시 국가에서
월 최대 5만원 매칭 지원



**위탁아동
생계급여(약53만원),
의료·교육급여 등**

이 외에도 위탁아동 소득공제, 전세주택 지원, 에너지바우처, 자립지원 등의 지원이 있습니다.

가정위탁, 우리가 함께 합니다.
가정위탁지원센터 / 읍·면·동 주민센터

문의 : 1577-1406

※ 자료: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「알림-보도자료」, 16620,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, 아동권리보장원, 2020.5.22.